

# 근로계약서

시재건설(주) 대표 가차현,이영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철수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장소	무안성면개발사업		담당공종	제작		
팀단위 공사구간	제작 1팀		팀장명	김팀장		
계약기간	2025-12-01 ~ 2025-12-31 1개월	해당월 말일로 한다.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을"이 담당하는 팀단위 공사구간 제작 1팀 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 때, 발주처 또는 원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현장간의 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사직)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과급	소정근로기간(시간) 내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공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팀단위 공사수행에 따른 물량에 미리 약정한 단위당 단가를 곱하여 발생한 금액에 "을"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단위당 단가는 "갑"의 시공도면 및 시방서에 근거 팀장과 협의하여 체결한 성과급지급약정서에 근거 팀장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임금	1. "을"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급 ( <b>₩175,216</b> )원, 시간급( <b>₩21,902</b> )원으로 하고, 법정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 지급 한다. 단, 태업시에는 태업을만큼 임금이 산감되며, 근무지이탈, 무단출근시, 우천등 천재지변으로 작업을 못한 경우 해당임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①연장근로수당: 시간급×연장근로시간×150% ②휴일가산수당: 시간급×휴일근로시간×50% ③야간근로수당: 시간급×야간근로시간(22:00~06:00)×50% ④유급주휴수당: 전 주간(월~금)만근한 경우 시간급×8h ⑤연차휴가수당: 1개월(1~말일)간 만근 후, 연차휴가 미사용시 시간급×8h ⑥국공휴일수당: 시간급x8h  2. 임금은 익월 <u>20일</u> 에 지급하며,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을" 명의의 송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송금 계좌번호:	110123456789	국민	김철수	
	3. 회사는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을"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4. 소정근로시간 내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공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을"의 임금은 위"1항"에 기본일급에 위1항 ①호~⑥호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급 ( <b>240,000</b> )에 출역공수(월-토 8시간 1공수, 연장 2.5시간 0.5공수)로  것에 대해 동의한다.	동의자	김철수			
임금 구성내역	일급 산정내역	기본일당	유급주휴	유급휴일	토·휴일할증	연차수당
	산정기준	73.01%	14.60%	0.00%	6.08%	6.31%
	시간급	₩21,902	₩175,216	₩35,043	₩0	14601.3233150162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 1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 할 수 있다. 2. 사업시간 07:00 ~ 종업시간 17:00(월~토). 휴게시간 11:30~13:00(1.5h), 16:00~16:30(0.5h)로 한다. 출퇴근 시간, 식사·간식시간, 식사·간식을 위한 이동시간, 천재지변(비, 눈, 폭염, 강풍, 한파등)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기후, 계절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작업할 수 없음을 통보를 받은 경우는 출근해서는 안된다. 3. "을"은 사업시간 07:00( "갑"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함)부터 종업시간 17:00(작업장의 정리, 정돈을 마치고 당해 작업장을 벗어나는 시간)동안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4. "을"은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시행에 도의하며, 2주단위 단역적근로시간 제,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1주 최대64h, 1일 최대 12h, 근로자대표 동의시) 및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로 근로(근로자대표동의시) 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자	김철수			
휴일/휴가	1. 근로자의 날(5.1), 관공서공휴일, 전주간(월~금)만근한 경우 일요일(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유급 주휴수당은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한다.포괄임금제 폐지시에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주 중 특정일을 정하여 휴일로 대체하거나, 토일을 격주로 휴무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 관공서공휴일 유급수당과 국공휴일 할증임금은 일당에 포함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공서공휴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4. 폭서기 하기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자	김철수			
연차휴가	1. "갑은 "을"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1년 미만인 경우 1월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전향의 연차휴가는 1일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휴가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당에 포함하여 포괄산정이나 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동의자	김철수			
근로계약 해지사유	1.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자동면직되며, 근속 단절됨) 2.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조회 불참, 안전장구 미착용(마스크, 턱끈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등 포함) 3. 근무지를 무단이탈(정해진 휴게시간 및 종업시간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 4.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한 경우 또는 기능 및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5. 적법하지 않은 집단행동/폭행, 파괴, 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6. 능률이 미달되어 기성(공사)진행률에 10%이하 미달될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태업한 경우 7. 폭행, 폭언, 유인물 무단배포, 금연구역에서 흡연, 무단촬영, 출입방해, 타근로자 근로방해 및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음주(승취 포함) 관련, 3회 이상 각 현장 Gate 또는 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9. 사업주의 사전 등의 없이 타회사에 취업한 경우(타 회사에 취업한 날에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 10. 불법 체류자, 금지약물 복용자, 기소 중지자(지명 수배), 노동능력상실자 11. "을"의 통장을 팀장등 특정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등 전자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12. 해당 팀원의 대다수가 퇴직하여 팀단위 협력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13. "갑"의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수칙, 회사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동의자	김철수			
기타 근로조건	1. "을"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에 현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현장에 최초 출근하여 수습 7일 동안 기능도를 테스트한 후 기능공(도면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경력 5년이상 모두 충족), 준기능공, 양성공 선별·급여책정 및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계약 작성은 거부하거나 기능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취소된다. 3.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이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 4.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현장내 출입관리, 공사 및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청 및 발주처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5. "을"은 "갑"의 타 현장에서 자발적사직/계약기간 만료 되었음을 확인하여, 본 근로계약 이후 당 현장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에 이의없이 동의한다	동의자	김철수			
교부확인	상기 근로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그의 사항은 현장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정히 교부받았음	동의자	김철수			
작성일: 2025-12-01						
사용자 ("갑")						
회사명	시재건설(주) 대표 가차현,이영로	성명	김철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76,3층	주 소	서울시 논현로 646			
현장주소	서울시 논현로 646	주민등록번호	010101-1234567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현장관리인	관리인	핸드폰번호	010-1001-0001		